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1가단5153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구
변 론 종 결 2022. 9. 19.
판 결 선 고 2023. 2.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6,654,174원 및 그 중 64,594,201원에 대하여는 2021. 2. 16.부터, 81,864,089원에 대하여는 2021. 3. 5.부터 각 2021. 9.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81,864,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2021. 9. 1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47,596,1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47,596,1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피고 A,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은 2017. 10. 18. 및 2019. 6. 7. 원고와 사이에 2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6. 8. 26.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21. 2. 16. 및 2021. 3. 5.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수는 146,654,174원 및 그 중 64,594,201원에 대하여는 2021. 2. 16.부터, 81,864,089원에 대하여는 2021. 3. 5.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1) 피고 A과 피고 C은 2004. 11.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C이 2020. 7. 2. 피고 A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24399)을 제기하였고, 그 이혼소송 중인 2020. 9. 25.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피고 A이 자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C은 2020.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던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새로이 2020. 10. 8. F주식회사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302,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70,000,000원 내지 63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인 147,596,1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47,59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2016. 8. 26.부터 2019. 6. 7.까지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0. 9. 25.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21. 2. 16. 및 2021. 3. 5.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산분할의 실질을 가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2004. 11. 3. 피고 A과 혼인한 후, 2020. 12. 8. 이혼조정(서울가정법원 2020년48580)이 성립될 때까지 약 16년간 자녀 2명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기간 동안 피고 C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협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은 피고 A과의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2020. 7. 2.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자녀들의 양육비 1인당 월 1,000,000원’을 구하는 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중이던 2020. 9. 25.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증여하고 피고 C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채무는 피고 C이 인수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이루어졌고, 2020. 12. 8.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자녀는 14세, 15세로 피고 C이 안정적으로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 C은 자신이 인수한 채무 384,807,742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70,000,000원 내지 630,000,000원의 1/2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이 늘어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E은행의 피담보채무는 피고 회사가 채무자인 채무로 피고 C, A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이 E은행의 피담보채무까지 변제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혼 성립 이후 피고 C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터 잡아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큰 점, 피고 A과의 이혼사건에서 피고 C은 양육비 지급액을 사건 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피고 A은 개인사업체인 ‘G회사’를 운영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피고 A이 원고 내지 H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 A이 개인사업체 ‘G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이거나, 피고 A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일뿐,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부동산에는 ㉠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301,200,000원(이후 263,100,000원으로 변경됨)인 근저당권이 2015. 3. 5.에, ㉡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19. 3. 18.에, ㉢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E은행,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2020. 7. 17.에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2020. 10. 8.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각 변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2020. 11. 16. 접수 및 청구금액 123,911,168원, 2020. 11. 19. 접수 청구금액 60,765,449원), 원고(2020. 11. 19. 접수, 청구금액 80,000,000원 및 2020. 12. 1. 접수 청구금액 63,750,000원), I 주식회사(2020. 12. 1. 접수, 청구금액 79,432,633원), 채권자 H 주식회사(2020. 12. 21. 접수, 청구금액 98,497,270원)를 각 권리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보면, 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주택자금대출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2개의 E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무는 채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이고, 중소기업은행 등 가압류권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원고의 피고 A 내지 피고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이는바, 이들 채무는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소극재산이 아니라 피고 A의 단독 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별지